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1. 7. 1(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20호



토론회 순서

◆ 인사

10:00 - 10:05	개회/국민의례
10:05 - 10:10	인사 말씀 (이은주 의원)
10:10 - 10:15	인사 말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주제 발표

10:15 - 10:30	발제 1. 동물범죄 현장대응 실태와 문제점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장
10:30 - 10:45	발제 2.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10:45 - 10:50	휴식 / 장내 정리

◆ 패널 토론 (좌장 :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

10:50 - 11:00	토론 1. 동물학대의 사건화에 있어 문제점 한주현 변호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11:00 - 11:10	토론 2.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고 제도의 문제점 이수진 동물학대사건 신고 경험 시민
11:10 - 11:20	토론 3. 경찰의 동물범죄 수사 관련 개선방향 김순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경감
11:20 - 11:30	토론 4. 동물학대 사건에서의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과 한계 박상후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 동물보호감시원
11:30 - 11:40	토론 5. 피학대 동물의 사후관리 체계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11:40 - 12:00	자유토론 / 질의응답
12:00	정리 / 폐식

[개 회 사]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한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과 활동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집 건너 한집 꼴로 개·고양이 등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사람과 동물이 교류하는 일은 늘고 있지만, 반대 급부로 동물을 상대로 한 끔찍하고 잔혹한 학대·범죄 사건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640만 가구 시대의 암울한 이면입니다.

동물학대의 빈도가 높아지고 학대의 유형도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지만 사건 발생 시 우리 사회 대응 능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학대를 당한 동물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데다 대부분의 학대가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 그리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초동조치와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피학대동물 긴급 격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도 큼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들의 직무수행 준비 부족이나 소극적인 대처로 현장에서 피학대동물을 구조·보호하는 ‘골든아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피학대동물을 격리 조치한다고 해도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지자체가 반환을 거부할 근거 조항이 없는 등 법적 구멍도 많습니다.

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면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지난 3월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을 만들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조항 설명에 그쳐 실효성에 의심을 들게 했던 기존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보다 진전됐으며, 특히 ‘동물학대’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개정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동물대상 범죄 관련 풍부한 하급심 판례가 수록돼 있어 경찰들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전국 경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물 보호감시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룸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동물보호감시원 간 유기적 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동물학대 예방부터 신고, 조사, 사후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동물자유연대에서 발제하시는 ‘아동학대와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해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강화한 사례가 있듯, 동물학대 사건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문제의식과 의견들을 반영해 저도 동물학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환 영 사]



반갑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민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과 달리 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의 한 축인 민법의 개정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사회의 합의이자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며 그 잔혹함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학대는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동물학대에 대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동물학대 대응체계 정비’는 시의적절하며, 우리사회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국감에서 경찰 동물학대사건 수사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해 올해 전면 개정까지 이끌어주시고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이은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물자유연대에는 하루 수십통의 학대제보가 접수됩니다. 2019년 한 해에만 4,32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중복제보와 단순 방치를 제외하더라도 605건이었습니다. 적절한 사육환경과 먹이와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방치행위로부터, 상해를 입히거나 성적 괴롭힘, 죽이는 행위까지 학대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그리고 다양한 학대사건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처벌에 이르기가 매우 고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학대사건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은 고사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드물게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다시 학대자에 손에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동물학대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피학대동물의 안전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동물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대응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탓이 큼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여러차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여러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형량을 강화하거나 특정 사건 발생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 땀질하듯 파편적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반해 단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학대의 예방 - 발굴 및 신고 - 수사 - 처벌 -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주된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가 상이합니다. 동시에 보호의 책임이 있는 소유자들의 학대행위에 취약하며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피해진술능력의 부재, 증거확보의 어려움, 피학대동물의 보호문제,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보는 시각 등 동물학대 사건의 특징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은주 의원이 각 시·도와 경찰청에 요청해 진행한 ‘동물범죄 대응경험 조사’ 및 ‘동물학대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해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장님이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범죄 현장대응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님이 동물학대와 유사점이 있는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해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 한주현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님의 ‘위기동물 발굴 및 신고 체계의 보완점’, 김순영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경감님의 ‘경찰의 동물범죄 수사 관련 개선방향’, 박상후 강동구 주무관님의 ‘동물학대 사건에서의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과 한계’,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님의 ‘피학대 동물의 사후관리 체계’ 등이 발표, 토론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동물학대사건 신고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신고 경험이 있는 시민분이 직접 참여,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을 제시해 동물학대 대응체계 정비의 단초를 제공하리라 기대됩니다.

오늘 동물학대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발제자와 토론의 좌장, 토론자분들, 그리고 토론회에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 7. 1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축 사]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이은주 의원실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주최한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누구이든 차별과 혐오로 사회에서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만으로 모든 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인권의 최저선이라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인간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동반자로 함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동물들의 권리와 안전 또한 중심의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 동물범죄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범죄는 학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낮은 처벌 수위, 그리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이 아닌 소유물로 대하는 태도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개정 동물대상범죄 별칙해설)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사건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또한 적극적으로 시행해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감시원의 권한과 역량을 끌어올려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동물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당한 동물을 불쌍하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다뤄야 합니다. 범죄분석 관련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는 강력범들이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전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물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은 곧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많은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동물의 안전이 우리 사회 안전의 기준이라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

정의당 대표 여영국

[축 사]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먼저 토론회에 자리해 주신 모든 내외귀빈 여러분과 온라인상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이은주 의원님,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찰은 동물보호에 대한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 「동물대상범죄 별 척해설」을 발간하는 한편 동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동물학대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논의될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동물들이 사람과 공존하며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

경찰청장 김창룡

목 차

발제 1. 동물범죄 현장대응 실태와 문제점

: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이해원 소장

발제 2. 아동학대와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

: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 한혁 국장

토론 1. 위기동물 발굴 및 신고 체계의 보완점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한주현 변호사

토론 2.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고 제도의 문제점

: 동물학대 제보경험 이수진 시민

토론 3. 경찰의 동물범죄 수사 관련 개선방향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김순영 경감

토론 4. 동물학대 사건에서의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과 한계

: 강동구 박상후 동물보호감시원

토론 5. 피학대 동물의 사후관리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양성철 사무관

발제 1

동물범죄 현장대응 실태와 문제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이 혜 원



동물범죄 현장대응 실태와 문제점

동물보호감시원 및 경찰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21.07.01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이혜원 대표

내용

- 동물보호감시원 및 경찰 대상 설문조사 내용 분석
- 동물학대 대응체계에 있어 문제점 도출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에 요청하여 진행됨
- 전국의 동물보호감시원 333명이 참여함
- 2021년 4월에서 2021년 5월까지 진행됨

Page 03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1. 귀하가 동물보호감시원 업무(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2개월 이내	② 13~24개월	③ 25~36개월	④ 37개월 이상	⑤ 모름/무응답	계
사례수							
전	지역						
■	서울	26	8	1	4	1	40
■	부산	11	2	-	3	1	17
■	대구	3	4	2	1	-	10
■	인천	2	-	-	1	10	13
➢ 12개월 미만의 동물보호감시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보직순환이 단시간에 이뤄지고 있음. ➢ 동물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기 전에 타업무로 발령받는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의 규모와 동물보호감시원 인원수는 비례하지 않음.							
■	영남	10	5	2	2	5	24
■	제주	1	-	-	-	2	3
■	세종	1	-	-	-	-	1
	평균	8	4	2	2	4	20

Page 04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2. 업무 수행기간 중 동물범죄 대응 경험이었습니까?

		사례수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무응답	계
전 체 지역	서울		23	16	1	40
	부산		10	6	1	17
	대구		7	3	-	10
	인천					
	평균		7	9	4	20

- ▶ 업무 수행 기간동안 동물범죄 대응 경험이 “없다”와 “모름/무응답”이 “그렇다”의 거의 2배가 됨.
- ▶ 실제 신고는 지자체가 아니라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로 제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Page 05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3. 대응 했던 동물범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사례수	① 동물학대	② 무허가/등록 영업	③ 모름/무응답	계
전 체 지역	서울		22	7	16	45
	부산		7	5	7	19
	대구		7	5	3	15
	인천		3	1	10	14
	평균		7	3	12	22

- ▶ 동물범죄의 유형은 “무허가/등록 영업” 보다 “동물학대”가 2배 넘는 수치임.
- ▶ 동물학대와 관련된 동물보호감시원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임.

전남		14	5	14	33
경북		5	1	18	24
경남		7	4	12	23
제주		1	1	2	4
세종		1	-	-	1
평균		7	3	12	22

Page 06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4. 해당 사건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복수응답 가능)

		① 시민 제보	② 언론/방송	③ 타기관	④ 현장조사 등 자체 파악	⑤ 기타	⑥ 모름/무응답	계
전 제	지역	사례수						
	서울	20	1	5	5	2	15	48
	부산	9	-	-	-	1	7	17
	대구	6	1	-	-	-	3	10
	인천	2	1	-	2	-	10	15

➢ “ 시민 제보 ” 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이 사육되는 곳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 정황을 파악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는 독일의 지자체 내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국(Veterinäramt)의 경우와 같음.)

전 제	지역	사례수	① 시민 제보	② 언론/방송	③ 타기관	④ 현장조사 등 자체 파악	⑤ 기타	⑥ 모름/무응답	계
	전남		11	2	2	3	1	14	33
	경북		5	1	-	-	1	18	25
	경남		9	1	-	1	-	12	23
	제주		-	-	-	-	-	3	3
	세종		1	-	-	-	-	-	1
	평균		7	1	1	1	0	12	21

Page 07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5.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 여부

		① 현장조사를 했다	②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③ 모름/무응답	계
전 제	지역	사례수			
	서울	23	1	16	40
	부산	9	1	7	17
	대구	7	0	3	10

➢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를 진행이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으나

“ 현장조사를 했다 ”와 “ 모름/무응답 ” 과 비교했을 때에는 “ 모름/무응답 ” 이 1.5배 더 많음.

전 제	지역	사례수	① 현장조사를 했다	②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③ 모름/무응답	계
	충북		8	0	14	22
	충남		11	0	5	16
	전북		10	0	15	25
	전남		14	1	14	29
	경북		5	1	18	24
	경남		10	0	12	22
	제주		1	0	2	3
	세종		1	0	0	1
	평균		8	0	12	20

Page 08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6. 사건 대응시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전문가나 단체 풀(pool)을 갖고 계신가요?

		사례수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지역	서울		9	18	13	40
	부산		3	8	6	17
	대구		1	6	3	10
	인천		-	3	10	13

➤ 업무 담당 경력이 12개월 미만의 다수의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전문가나 단체 풀이 필요한 상황이나 실제 도움을 받는 경우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사료됨.

	전남		5	10	14	29
	경북		-	8	16	24
	경남		5	8	9	22
	제주		-	1	2	3
	세종		-	1	-	1
	평균		3	7	10	20

Page 09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7. 주로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전문가나 단체는 어디인가요?

		사례수	① 수의사(협회)	② 변호사	③ 동물보호단체	④ 기타	⑤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지역	서울		6	2	3	8	26	45
	부산		2	-	1	4	11	18
	대구		1	2	-	1	6	10
	인천		-	-	1	2	11	14

➤ 모름/무응답이 75%를 차지하며 동물보호감시원이 전문가나 동물보호단체에 특정 도움을 요청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충북		-	2	-	-	20	22
	충남		2	1	3	2	10	18
	전북		3	2	4	2	15	26
	전남		2	-	3	3	21	29
	경북		-	-	-	-	24	24
	경남		3	4	2	2	15	26
	제주		-	-	-	-	3	3
	세종		-	-	-	-	1	1
	평균		1	1	1	2	15	21

Page 10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8.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학대 동물의 격리조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례수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무응답	계
전	체					
지역	서울		8	17	15	40
	부산		1	10	6	17
	대구		1	6	3	10
	인천		2	1	10	13
	광주		2	2	8	12

➤ 피학대 동물의 격리조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와 “모름/무응답” 이 90%임.

➤ 주관식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동물학대 기준 모호, 수사기관과의 미온적 대응 및 비협조, 대응 과정의 매뉴얼 부재, 법 적용 기준 모호 등의 답을 토대로 실제 학대 상황에서 격리조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세종			1	-	-	1
	평균		2	6	12	20

Page 11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9. 격리조치된 동물은 주후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나요?

		사례수	① 반환되었다	② 반환되지 않았다	③ 모름/무응답	계
전	체					
지역	서울		1	6	33	40
	부산		-	1	16	17
	대구		-	1	9	10
	인천		-	0	11	11

➤ 실제 격리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름/무응답” 의 답이 85%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격리조치 이후에 반환된 경우는 33.33%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임.

충북			-	2	20	22
충남			-	6	10	16
전북			-	3	22	25
전남			2	4	23	29
경북			1	1	22	24
경남			1	2	19	22
제주			-	1	2	3
세종			-	1	-	1
	평균		1	2	17	20

Page 12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10. 동물의 격리조치 경험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격리대상이 아니어서	② 격리대상으로 의심은 되지만 규정이 모호해서	③ 보호공간이 없어서	④ 소유자의 원강한 저 항 때문에	⑤ 기타	⑥ 모름/무응답	계
전	체	사례수						
지역	서울	8	2	-	2	1	29	42
	부산	3	1	-	-	2	11	17
	대구	5	-	1	-	-	4	10

➤ 모름/무응답 답변이 80%로 제일 높으며 격리대상으로 의심되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답변으로 보아 동물보호감시원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격리조치 필요시의 매뉴얼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전남	2	3	2	-	4	18	29
경북	2	-	-	-	1	21	24
경남	3	1	1	1	3	17	26
제주	-	-	-	-	-	3	3
세종	-	-	-	-	-	1	1
평균	2	1	0	0	1	16	20

Page 13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11. 최종적으로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었나요?(복수응답 가능)

■ 전 제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사례수	① 경찰에 고발	② 주의 및 계도조치	③ 위법 사항이 없어 그대로 종결	④ 기타	⑤ 모름/무응답	계
							14	5	6	6	19	50
							5	1	2	1	10	19
							5	1	5	1	3	15
							2	1	1		10	13

➤ 동물학대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고발하거나 주의 및 계도조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름/무응답이 과반수임으로 실제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전남	7	6	1	4	14	32
경북	4	3	2	-	18	27
경남	3	4	3	3	12	25
제주	1	-	-	-	2	3
세종	-	-	-	1	-	1
평균	4	2	2	2	12	22

Page 14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11. 동물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애로점이나 한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전담인원 부족
- 동물학대의 기준 모호
-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 비협조
- 법 적용 기준 모호
- 사전 방지 및 사후 범죄행위 증명하기가 어려움
-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또는 무혐의
- 자문 및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없어 해결이 어려움
- 민원신고 직후 현장방문 등이 어려운 업무 여건
- 수사와 판례 참고사례 부족
- 즉시 현장적발의 어려움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부재
- 동물전담공무원 부재
- 타업무로 인해 사건에 집중하여 대응하기 힘든 여건
- 동물소유자의 인식 부족

Page 15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

12. 사건 대응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 전담기관 필요
- 자치구와 경찰과의 원활한 협력
- 경찰의 적극적 대응
- 동물학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 상황별 사례집 공유 필요
-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에 학대에 관한 내용이 세분화되어 명확한 근거규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피학대 동물보호 조치 확대
- 동물학대에 대한 대응 사례집, 매뉴얼 필요
- 관련 업무 교육
-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정의되어 처벌상 한계가 있음으로 민법 수정이 필요
- 학대로 인한 보호동물의 사후 조치
-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Page 16

경찰관 설문조사 내용 분석

- 조사부서: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 조사대상: 전 경찰관 중 128,364명 중 3,235명 응답
- 조사방법: 이메일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1.72\%p$
- 조사기간: 2021년 5월 11일 ~ 2021년 5월 20일

Page 17

경찰관 설문조사 내용 분석

의상을 등변하지 않고 동물을 가볍게 때리는 행위

	빈도(명)	퍼센트(%)
명백한 동물학대이다	742	22.9
동물학대인 것 같다	699	21.6
판단하기 어렵다	1,110	34.3
동물학대가 아닌 것 같다	496	15.3
동물학대가 전혀 아니다	188	5.8
합계	3,235	100.0

동물을 강하게 때리는 행위

	빈도(명)	퍼센트(%)
명백한 동물학대이다	2,116	65.4
동물학대인 것 같다	782	24.2
판단하기 어렵다	270	8.3
동물학대가 아닌 것 같다	45	1.4
동물학대가 전혀 아니다	22	0.7
합계	3,235	100.0

- 동물을 가볍게 때리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렵다에 답이 제일 많음.
- 강하게 때리는 것에는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답한 것이 제일 많음.
- 강하게 때리는 것이 무엇인지 별도의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Page 18

경찰관 설문조사 내용 분석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혹서나 혹한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빈도(명)	퍼센트(%)
명백한 동물학대이다	1,797	55.5
동물학대인 것 같다	784	24.2
판단하기 어렵다	494	15.3
동물학대가 아닌 것 같다	104	3.2
동물학대가 전혀 아니다	56	1.7
합계	3,235	100.0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먹이나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행위

	빈도(명)	퍼센트(%)
명백한 동물학대이다	2,127	65.7
동물학대인 것 같다	825	25.5
판단하기 어렵다	222	6.9
동물학대가 아닌 것 같다	38	1.2
동물학대가 전혀 아니다	23	0.7
합계	3,235	100.0

➤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먹이와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동물학대임을 경찰관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Page 19

경찰관 설문조사 내용 분석

예당 사건을 어떤 경로로 접수하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응답 수	응답 수 퍼센트(%)	응답자 수 퍼센트(%)
시민/시민단체 신고·제보	920	73.5%	81.3%
언론 방송 보도	22	1.8%	1.9%
지자체 공공기관 신고	77	6.2%	6.8%
순찰 등을 통한 자체 인지	116	9.3%	10.3%
기타	117	9.3%	10.3%
합계	1,252	100.0%	110.7%

현장 출동 당시 동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십니까?

	빈도(명)	퍼센트(%)
그렇다	891	78.8
아니다	240	21.2
합계	1,131	100.0

동물의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십니까?

	빈도(명)	퍼센트(%)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확인	123	13.8
가까이 가서 육안으로 확인	653	73.3
숨겨진 외상 등이 있는지 만져가며 확인	103	11.6
기타	12	1.3
합계	891	100.0

➤ 경찰관이 현장에서 동물학대를 목격하고 사건을 접수하는 것보다는 시민/시민단체의 신고 및 제보와 지자체 신고로 인해 사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됨.

Page 20

경찰관 설문조사 내용 분석

사건 접수 후 현장에 출동 시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빈도(명)	퍼센트(%)
협조요청 경험 있음	606	53.6
협조요청 경험 없음	525	46.4
합계	1,131	100.0

협조요청 시 지자체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현장에 나오거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빈도(명)	퍼센트(%)
담당자가 현장에 나왔으며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짐	132	21.8
담당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았으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짐	118	19.5
담당자가 현장에 나왔으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74	12.2
담당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282	46.5
합계	606	100.0

➤ 경찰관이 지자체

동물보호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과반수이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

Page 21

경찰관 설문조사 내용 분석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빈도(명)	퍼센트(%)
협조요청 없이도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없어서	143	27.2
지자체가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84	16.0
협조요청을 해도 특별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25	23.8
출입권한 등 지자체의 권한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104	19.8
기타	69	13.1
합계	525	100.0

동물학대사건 현장출동시 전문가 혹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간다면 도움이 되려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퍼센트(%)
도움이 될 것 같다	2,187	67.6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551	17.0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	497	15.4
합계	3,235	100.0

➤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반면 전문가 혹은

시민단체의 도움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Page 22

경찰관 설문조사 내용 분석

담당하셨던 동물학대 사건은 다음 동물학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응답 수	응답 수 퍼센트(%)	응답자 수 퍼센트(%)
동물을 죽임	174	41.3	52.4
동물에게 상해를 입힘	158	37.5	47.6
동물을 방치하거나 음식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음	49	11.6	14.8
동물을 성(性)적으로 괴롭힘	2	0.5	0.6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	38	9.0	11.4
합계	421	100.0	126.8

➢ 접수된 사건 중 “동물을 죽임”이 41.3%로 제일 많았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힘”이 37.5%가 뒤를 이음. 경찰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심각한 동물학대가 주로 접수되는 것으로 사료됨.

Page 23

경찰관 설문조사 내용 분석

동물학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습니까?

	빈도(명)	퍼센트(%)
매우 어려웠다	125	37.7
약간 어려운 편이었다	116	34.9
다른 사건과 비슷했다	80	24.1
약간 쉬운 편이었다	8	2.4
매우 쉬웠다	3	0.9
합계	332	100.0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응답 수	응답 수 퍼센트(%)	응답자 수 퍼센트(%)
동물의 생태나 습성을 잘 모름	60	10.5	18.1
동물보험이 생소함	41	7.2	12.3
동물보험이 부실함	66	11.6	19.9
중거 수집이 어려움	126	22.1	38.0
신고나 고소·고발 내용이 부실함	74	13.0	22.3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175	30.6	52.7
기타	29	5.1	8.7
합계	571	100.0	172.0

➢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가 어렵다는 답이 7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판단 지식의 부재, 법관련 지식 부족 및 범의 모호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Page 24

경찰관 설문조사 내용 분석

조력이 필요한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풀(Pool)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빈도(명)	퍼센트(%)
예	29	8.7
아니오	303	91.3
합계	332	100.0

➤ 동물학대 상황에서 전문가
및 전문기관 풀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관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빈도(명)	퍼센트(%)
예	241	72.6
아니오	91	27.4
합계	332	100.0

Page 25

경찰관 설문조사 내용 분석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빈도(명)	퍼센트(%)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	123	30.6
동물의 상태만 관찰	108	26.9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	80	19.9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72	17.9
기타	19	4.7
합계	402	100.0

동물학대가 의심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빈도(명)	퍼센트(%)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28	38.9
조사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12	16.7
당시 신고된 혹은 수사중인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30	41.7
기타	2	2.8
합계	72	100.0

➤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17.9%이며 이에 대한
이유로 동물학대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음

Page 26

동물학대 대응체계에 있어 문제점

- 동물보호감시원은 보직으로 단기간 순환업무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
- 학대접수 이후의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의 부재로 동물보호감시원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 모두 법의 부재 및 모호성을 언급하였으며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가짐
- 동물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의 필요성은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 학대 전담 지자체 부서 및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의 협력체계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Page 27

감사합니다

발제 2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
한 혁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

한혁 전략사업국장

동물자유연대

1.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유사점

가. 정의

1)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제3조 제7호)으로 정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제17조에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및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 11개 행위 열거
- 아동학대와는 별개로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정의.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해당 조항에 열거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미.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그 대상을 보호자로 한정. 아동학대에 비해 제한적
- 오늘날 아동학대는 비단 아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체벌이나 훈육이라 할지라도 아동의 신체, 정신,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학대로 보는 추세

2) 동물학대

-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필요한 혹은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이지만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 일부 행위로 제한

나. 유사점

1) 발견의 어려움

-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피해 사례 3만 건 중 가정 내 발생이 79.5%에 달하며, 가해자 중 75.6%는 부모인 것으로 드러남. 대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학대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우며, 제3자가 이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가정사'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움.
- 동물학대의 경우 정확한 통계의 부재로 소유자등¹⁾에 의한 학대 비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경우 길고양이 등 가정 밖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다수. 하지만 가정 내 동물학대 사건이 이슈화 되지 않은 것은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아동의 경우 보육 및 교육기관 등에서 관찰이 가능하며, 영유아검진 및 병원진료 등의 과정에서 학대확인 가능. 보육 및 교육기관, 병원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2018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통.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여부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 반면 동물의 경우 습성상 산책이 필수인 개의 경우에도 산책을 시키지 않는다 하여 처벌이 불가, 마음먹기에 따라 외부 노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학대여부 확인이 더욱 제한

2) 증거수집의 어려움

-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범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거수집 또한 쉬지 않음. 상해 등 일부 학대 정황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아동 또는 동물 등의 '실수' 등으로 둘러대는 사례가 많으며, 실제 학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움.
- 아동이나 동물의 피해진술능력이 제한되는 점도 범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아동의 경우 언어발달 과정에 따라 진술능력에 차이가 있고, 어느정도 성장 후에는 진술능력을 갖출 수 있으나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진술을 꺼리거나 회피,

1)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의미

또는 거짓으로 응하기도 함. 동물의 경우에는 언어소통이 불가해 피해여부에 대한 진술능력 전무. 미국 뉴햄프셔주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경우 불안 증상 표출 △꼬리나 생식기 부위 접촉시 과도한 예민 증세 또는 난폭한 태도 등 동물학대 징후를 제시

3) 사회적 인식

- 올해 1월 26일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 삭제. 이미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혔지만 교육 및 훈육을 위해서라면 '사랑의 매'가 필요한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 실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징계권 삭제 100일을 맞아 진행한 인식조사('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 삭제' 그 이후)에서 부모 응답자의 66.7%는 징계권 삭제로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60.7%는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
- 아동학대와 징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정당화되고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 발생
- 2019년 한 유튜버가 인터넷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는 등의 모습을 그대로 송출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16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 당시 해당 유튜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은 아니다", "내 훈육 방식"이라고 주장. 같은 해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바박에 내리쳐 죽인사건의 범인이 범행 다음날 분양 받은 새끼고양이를 자신을 할취려 했다는 이유로 내리쳐 죽인 사건 발생. 훈육을 학대범죄에 대한 변명거리로 활용

4) 학대 대상 보호의 문제

-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또다른 유사점은 학대 대상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임. 피학대 아동이나 동물이 학대를 가한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 남아 있게 될 경우 재학대 우려가 있고, 이들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 제약 요소로 작용
- 특히 동물의 경우 그 자체로 증거물의 성격이 있어 해당 동물을 처분함으로써 사건 은폐시도를 할 수도 있음. 2019년 5월 군산에서 봉고차 뒤에 개를 묶어 놓고 달린 사건 발생. 이에 동물자유연대에서 경찰에 동물학대혐의로 고발했으나 별다른 격리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사 요구에 지자체에서 현장 방문시 견주는 "개가 죽어서 산에 묻었다"고 주장
-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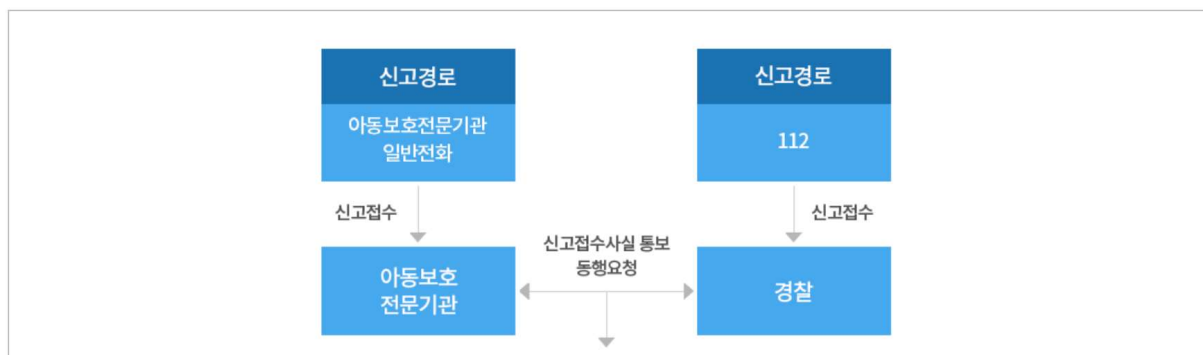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이 포함. 또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 후견인의 변경 심판도 가능

- 반면 동물학대사건에 있어서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거나 소유자로부터 학대(동물보호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그러나 보호시점이나 판단에 대한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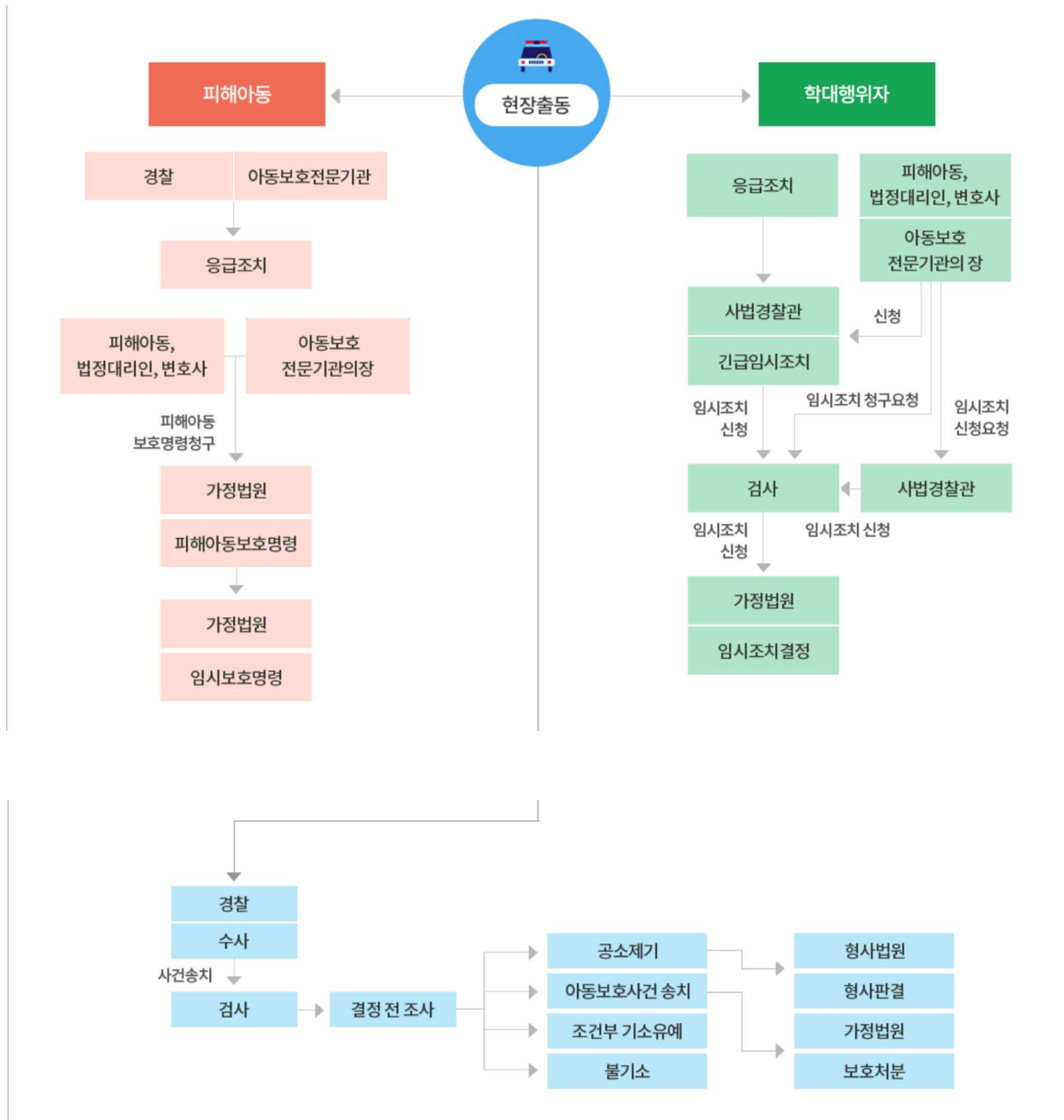
2. 아동학대 대응 체계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훈육' 혹은 '훈육을 위해 불가피한 체벌'에서 사회 공적인 영역으로 나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폭력으로 인식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음. 1979년 UN 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개설한 이래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 200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²⁾.

[그림1] 아동학대 개입절차 (아동권리보장원)



2) 박선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



가. 학대 감시 체계

아동 학대가 아동에게 끼칠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범치는 '조기 발견'중요. 그러나 아동의 양육은 오래전부터 '가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여겨져 외부인에 의한 발견이 어려웠을뿐만 아니라, 발견했다 하더라도 훈육과 양육방법의 문제로 여겨 잘 드러나지 않음. 최근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따라 아동학대 감시 강화. 아동학대 신고자의 상당수가 제3자인 점은 아동학대 감시 의무가 관련 기관과 의무자를 넘어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

1) 아동보호전문기관³⁾ 설치와 지자체 역할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6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역할 수행.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을 진행.

최근 2020년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대응 과 예방의 역할을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의 역할로 보다 강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기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자체를 통해서도 학대신고가 가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 대 의심사실에 대한 현장조사와 학대여부 판단을 직접 조사⁴⁾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는 발견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지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는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 부과

[표1]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

3) 「아동복지법」제4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2. 피해아동 상담소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 의 사후관리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4) 아동복지법 2020년 10월 1일 개정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나. 학대 발생 시 조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함께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함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가해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와 질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진행.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라 주장하며 학대행위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해아동의 솔직한 의사표시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⁵⁾. 이와 같이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대 범죄에 대한 조사에 조사거부, 인적자원의 부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동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을 확인하고 아동을 포함한 관계인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아동학대 범죄 발견에 이은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다. 피해 아동 보호

아동학대 범죄에서 가장 긴급하게 취해져야 할 조치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임. 가해자 및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도 아동에 대한 보호는 필수. 보호조치는 크게 1)응급조치와 2)보호조치로 구분

응급조치는 현장에 출동하거나 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혹은 학대피해를 확인할 수 있고 재학대의 위험이 높은 경우,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해진 기간 내의 응급조치이후에도 학대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⁶⁾가 취해지기도 함. 보호조치는 보다 장기적인 조치로써,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학대 아동에게 상담과 보호양육 제공

5) 박선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21-27.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표2]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응급조치는 72시간 이내로 가능하며, 모든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고려해야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보호조치	-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진행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지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 상황에 따라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소 -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진행

피해아동의 보호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호조치의 범위가 직접적인 피해아동을 포함한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으로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한 아동이 입었을 피해를 고려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

또한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를 집행함에 있어,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을 명시.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가 아동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혹은 양육자인 경우가 다수. 부모 혹은 양육자와 피해아동의 분리는 학대행위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일지라도, 피해아동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 병행. 임시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접근금지를 비롯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처분 가능. 그러나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법

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긴급임시조치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100미터 이내), 아동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 가능

라. 평가 및 사후 관리

아동학대 범치는 사법처리 외 학대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학대를 가한 부모나 양육자에 대한 지원 필요.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의 사법처리에 대한 지원, 학대 가해자가 부모나 양육자인 경우 원가정보호를 위한 지원, 보호조치된 아동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 기관 연계 지원으로 구분

이러한 다방면에 이르는 지원은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고, 학대 재발 위험성 저감 가능. 평가와 사후관리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 피해아동 및 그 가족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을 지원하며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 수행. 이후 사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종결을 맺게 되는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거나 아동이 시설에 장기격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종결 결과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관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에서 많은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 이는 아동의 보호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동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부모 혹은 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 그러나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나 양육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필수.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대부분 양육방법에 대한 무지 혹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표3]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피해아동 조치		사례건수(비중)
원가정보호 지속		20,164(82.0)
가정복귀	원가정보호-가정복귀	101(0.4)
	분리조치-가정복귀	888(3.6)
	기타-가정복귀	31(0.1)
	소계	1,020(4.1)
분리조치	분리조치 지속	2,841(11.5)
	원가정보호-분리조치	394(1.6)
	분리조치-분리조치	46(0.2)

	기타-분리조치	6(0.0)
	소계	3,287(13.4)
기타		101(0.4)
사망		32(0.1)
계		24,604(100,0)

3. 동물학대 대응단계별 개선방향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는 사적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보호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 여러 공통점이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 존재.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아동학대의 경우 '예방 및 발견 단계', '신고 및 수사 단계', '사후관리 단계'별로 개입절차를 세분화 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⁷⁾과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임. 아동학대의 대응체계를 참고하는 동시에 동물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 단계별 중앙부처, 지자체, 수사기관, 동물보호단체 등의 역할과 협력구조의 개선방향 모색 필요

가. 예방 및 발견 단계

예방 및 발견 단계는 학대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단계와 학대 발생시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발견단계로 구분 가능

1) 예방단계

아동학대의 경우 예방을 위해 일반시민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양육 태도 및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방지 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진행. 부모 교육만 하더라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영유아기 자녀 부모, 학부모 등으로 대상을 나눠 교육을 진행 중

반면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교육은 주로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지자체에서만 간헐적으로 운영. 또 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려인 대상의 펫티켓이나 사회화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제 동물학대 예방에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아동학대와 비교한다면 교육 내용, 교육대상, 전달체계 모든 면에 있어 부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와 같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보호교육을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학교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성인의 경우 대상을 특정해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예를 들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해 추진 중인

7) 한국행정학회, 아동학대 수행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016, p.23.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반려동물판매업점(펫샵)에서 반려동물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에서 이러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거나, 현재 계획상으로는 펫샵에서 분양을 받을 때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하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거나 지인에게 받은 경우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

[표4] 예방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동물학대 예방교육 인프라 및 전달체계 부족 2. 반려동물 입양/분양시 검증 절차 부재	1-1. 민간 동물보호교육 지원 1-2. 펫샵 분양시 사전교육 의무화(시행 예정)	1-1. 학교 교육과정 내 동물학대 / 동물보호교육 반영 1-2. 반려동물 양육시 사전교육 의무화 2-1.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⁸⁾

2) 발견단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24개 직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또 보건복지부는 2018년 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 해당 시스템은 장기결석이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 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험징후 예측.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이 직접 해당 고위험가정을 방문해 조사와 상담으로 실제 가정위기사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작동.⁹⁾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배포와 교육을 진행,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제출

이에 반해 동물학대의 경우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단 408명만 지정되어 지자체 평균 1.68명에 불과.¹⁰⁾ 동물보호법

8)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은 현재 키우고 있는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향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후자를 의미한다.

9) 복지로 공식 블로그, <https://blog.bokjiro.go.kr/699>, 최종접속 2020. 12. 16

10)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상 이들에게 주어진 직무의 범위만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로부터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동물의 적절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등 12개 항목에 이름. 지나치게 많은 직무가 주어져 이들에게 동물학대를 예방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기대하는 게 어려울 지경. 실제 2019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서도 한해 동안 이들의 위반처분실적은 30건에 불과하며¹¹⁾, 시민 및 민간단체가 신고한 사건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신고의무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동물보호법 제16 제2항에서 동물보호단체의 임원 및 회원,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은 동물학대를 당한 동물을 발견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규정. 하지만 아동학대와 달리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조항 부재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얼마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으로 아동학대의 경우 보육/기관의 출석기록, 병원기록 등을 통해 이상징후를 포착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이런 기록이 없어 학대행위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려움¹²⁾

[표5] 발견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반려동물 양육현황 등 기본 정보 부족 2. 감시인력 및 체계의 미비 3.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 의문	1-1.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 강화 1-2.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2-1. 동물보호 사법경찰 확충 3-1.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 실시	2-1. 현재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을 민간단체 활동가 등으로 확장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업 구조 구축 3-1.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조항 신설 3-2.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교육 의무화

11)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보도자료

12) 2020 인구주택 총조사부터는 반려동물 양육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시켰으나 응답자가 거짓으로 답한다 해도 검증이 불가하고, 개별적인 정보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동물학대 모니터링 측면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

나. 신고 및 수사 단계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 수사가 진행되며(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현장에도 함께 출동.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동행출동은 2013년 552건에서 2016년 14,594건으로 증가¹³⁾. 현장조사 후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실시되며, 검사를 통해 청구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를 결정

1) 사건수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시 현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만 출동할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하거나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며, 사건 자체가 통보 누락되기도 하고, 경찰의 1차 출동 통보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시 중복조사라는 이유로 현장에서의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반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만 현장에 나갈 때는 학대행위자의 방해 등으로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 발생

동물학대의 경우에도 사건을 목격한 시민이나 동물보호단체가 신고에도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 2017년 10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서 자신의 딸이 반려동물로 키우던 햄스터 19마리 중 11마리의 목을 니퍼로 잘라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답변. 신고자가 머뭇거리자 현장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음.

2020년 11월에는 영업이 끝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업주가 신고하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응하는 사이 해당 남성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안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확인했지만,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추후 피해자가 주변 CCTV를 확인해 남성의 납치사실을 입증. 그러나 결정적 증거에도 경찰은 “집 수색 결과 강아지가 없었다”며 “강아지는 핸드폰 급이다(물건과 같다는 의미)”, “강아지 실종은 보호소에 알아보라”는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 결국 반려견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후 해당 남성의 집 인근에서 사체로 발견. 따라서 동물학대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의 ‘동물학대수사 매뉴얼’을 개정/보완 하는 한편, 현장 출동시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동행하거나 협업하도록 시스템 정비 필요. 또 동물학대사건의 경우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수의사가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13) 김아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08, 2018, p.6.

[표6]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경찰의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부족	1-1. 경찰 수사매뉴얼 개정/보완 (예정) 1-2. 경찰 대상 직장내 교육으로 동물보호교육 진행 1-3. 현장 출동시 수의사 동행 또는 피학대 의심 동물에 대한 수의사 검진 의무화	1-1. 동물학대사건시 동물보호단체 동행 의무화 ¹⁴⁾ 1-2. 가정폭력 발생시 반려동물 이 있는 경우 동물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 병행

2) 피학대 동물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아동 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조치 가능.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법으로 규정¹⁵⁾

더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거나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일시보호 등을 조치

동물학대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4조에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 및 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격리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 △격리조치 대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재량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격리기간과 방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
 그러므로 격리시점에 대해 '즉시'와 같이 명확히 하거나 '긴급격리'와 '보호조치' 등으로 사안의 시급한 정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 격리조치의 대상 역시 '피학대 동물 또는 학대가 우려되는 동물'로 확장하고, 격리조치 후 학대 재발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충분히 격리하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 제공 필요

[표7] 응급·보호조치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장·단기과제

14) 미국의 경우 동물학대사건 발생시 동물보호단체인 ASPCA가 수사권을 가지고, 직접 사건을 수사하기도 한다.

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불분명한 격리 시점 2. 협소한 격리조치 대상 3. 불충분한 격리기간 4. 열악한 보호환경	1-1.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즉시'와 같이 시점 특정 2-1. 피학대 동물과 학대우려 동물로 확대(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중) 3-1. 피해가 회복된 시점 및 재발우려가 사라진 시점으로 확대 4-1. 동물보호단체로 인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1-1. 응급조치와 보호조치를 분리 3-1. 피학대 동물(학대 우려 동물 포함)에 대한 소유권 제한 4-1.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규정 마련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현행법에서는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하거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명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도 가능

반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전무. 설사 피학대동물에 대해 격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3일 후 학대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조차 부재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격리조치 동물에 대한 반환 또는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8] 학대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있어 문제점과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부재	1-1. 격리조치 동물에 대한 반환 제한	1-1.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1-2. 동물보호단체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1-3.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다. 사후 관리 단계

아동학대사건의 사후 관리 단계는 피해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 아동복지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관리 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치료와 상담 및 교육, 타기관과의 연계된 활동을 수행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재학대 발생여부, 아동치료 여부 등을 평가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 진행

동물학대의 경우 사후관리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피학대 동물의 보호수준은 참담한 수준으로 피학대 동물이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 없이 학대자의 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다수. 격리 조치 후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온다 할지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음. 다른 유기동물 등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센터로 입소하는데 2019년 기준 입소동물의 46.6% 동물이 자연사 혹은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¹⁶⁾

따라서 향후에 동물학대 역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필수

[표9] 사후 관리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사후 관리 체계의 부재 2.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부실 3. 학대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부재	2-1. 피학대 동물보호 과정 정비(격리조치→수의사검진 및 동물병원 진료(필요시 치료 진행)→동물보호센터 입소) 3-1. 상담치료 및 동물 양육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1-1. 동물학대 사건 사례관리 체계 구축(사건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논의체 구성 등) 2-1.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별도 보호규정 마련 3-1. 소유권 제한 및 재양육 시 의무교육 이수 등

16)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보도자료

토론 1

위기동물 발굴 및 신고 체계의 보완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한 주 현



위기동물 발굴 및 신고 체계의 보완점

한주현 변호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1. 동물학대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원인

지난 2019년 한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였다가 이를 본 시청자들에 의해 신고 된 사건이 있었다. 올해 초에서는 20대 두 명이 길거리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를 하듯 공중에서 2, 3차례 빙빙 돌리다가 이를 목격한 주변 행인에 의해 인터넷에 사건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수사가 진행된 결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¹⁷⁾

위 두 사례처럼 제3자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개는 수사기관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사건화된다. 과거에 비해 동물학대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동물학대 사건이 공식 기관 측에 인지되지 못한 채로 수면 아래에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학대자가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타인에 의한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소유자에 의한 학대는 대개 집 안에서 목격자 없이 이뤄진다. 학대의 증거도 쉽게 은닉되곤 한다. 더 큰 문제는, 제3자로서는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목격하였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대개 소유자는 '훈육' 또는 '나만의 사육 방식'이라는 빌미 하에 동물학대를 행하는데, 이에 대해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사 신고 등의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학대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곧 인지하게 된다.¹⁸⁾

두 번째는 신고기관의 모호성 때문이다. 필자만 하더라도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캠핑장에 갈 때마다 인근 음식점 야외에 묶여 있던 강아지를 보며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영하의 날씨에 공공 얼어버린 물그릇만 살고 있는 목줄에 매인 개는 분명 동물보호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절한 사육·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고, 상황에 따라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

17) 유튜버의 경우에는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20대 두 명의 경우에는 각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8) 예를 들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를 하듯 빙빙 돌린 사건에서,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는 벌금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다시 해당 강아지를 돌려받았다. 즉, 해당 강아지에 대한 학대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의 동물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의 반응은 이미 예상되는 것이었기에, 음식점 측에 개를 저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딱히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동물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마음 놓고 신고할만한 전담기관이 없다. 특히 동물학대의 경계에 있는 애매한 사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보완점 1) 피학대동물 격리 제도의 현실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 학대행위가 인지되곤 한다. 이 경우 주변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학대행위를 신고하는 등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가 담보되어야 한다.

자신이 동물학대 신고를 할 경우, ① 동물은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구조될 것이라는 점, ② 소유자는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 ③ 소유자는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①은 아주 미미하게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②는 종종 이루어지기는 하나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③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중 가장 시급한 것은 ①의 점, 즉 동물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피학대동물을 즉시 소유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이 신고를 하였음에도 그 동물이 여전히 소유자와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신고자들의 무력감은 향후 다른 동물학대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14조는 지자체가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동물을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소유자가 동물학대를 한 경우에도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임을 인지하는 즉시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이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격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는 때에만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단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본인이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치료하겠노라 공언한다면 지자체로서는 적극적으로 격리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법 조문 자체의 개정이 필요한 지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격리조치를 행해야 하는 지자체 측에 '판단'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의 특성상 지자체는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판단'을 했을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이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권자'라는 막강한 지위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즉, 지자체는 피학대동물의 편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놓여 있지 않다. 격리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다.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 관련 조항이 이러한 형태로 제정된 이유는 아마도 지자체가 피학대동물을 충분히 치료·보호할만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고려되어서 일 것이다. 따라서 뒤이어 논의할 동물학대 업무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학대동물 격리에 관한 동물보호법 제17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일 때 격리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일 때 격리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동물단체 또는 수의사 등과 연계함으로써 현장 출동 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면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4조	개정(안)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중략)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 ----- ----- ----- ----- ----- ----- -----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

3. (보완점 2) 동물학대 업무 전담 기관 설립의 필요성

위기동물이 제대로 발굴되고 신고되지 못하는 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이하 '동물학대 전담 기관'). 동물학대 전담 기관의 설립을 통해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동물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 대응 업무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 기관은 지자체별로 산재 되어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피학대동물이 제대로 치료·보호되어 종국에는 성공적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하더라도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혹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지 등을 알지 못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여도 자신의 신고가 진지하게 접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에 민간단체인 동물단체에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동물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동물학대 전담 기관은 현재의 동물학대 수사 시의 미비점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학대동물에 대한 수사 및 사후 보호조치가 병행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수사기관의 수사과 지자체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연계되어있지 않다는 비판이 다수 있다. 전담 기관의 출범은 충분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물학대 전담 기관이 설립될 경우 현재보다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시 동물학대 전담 기관 측에서도 함께 출동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동시에 이행하는 연계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토론 2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고 제도의 문제점

동물학대 제보경험 시민
이 수 진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물학대 신고체계의 문제점

이수진 시민

동물학대사건 신고 경험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칠곡군에 거주 중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마을 유기견을 동물자유연대 구조 활동가님들께서 구조를 해주셨는데 유기견을 구조하게 된 계기와 구조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지난 5월 18일경 발생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유기견에게 사료를 챙겨주고, 잘 먹고 있는지 집 외부 CCTV를 확인하던 중, 저희집 건너편 밭 주인분께서 유기견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마을 어린이들이 보고 있었던 상황)

누가 봐도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돌을 던졌고, 처음에 던진 돌이 빗나가자 또다시 돌을 주고 계시던 중, 제가 밖으로 나가 제지를 하였습니다. 유기견에게 왜 돌을 던지시냐 여쭙어보니, 본인 밭에 들어와서 엉망으로 해놓고 가서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환경 특성상 고양이, 고라니, 멧돼지 등등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곳인데, 유기견이 밭을 엉망으로 해놨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돌을 던지는 건 동물학대 처벌대상이라고 말씀드리니, “당신 개야? 당신 개도 아닌데 왜 난리냐, 잡아서 보신탕집에 데려다 주던지 할테니 신경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해서 제가 키울 테니 며칠 시간을 주시라고 양해를 부탁드렸으나, 그 밭 주인분은 이튿날이 지난 5월 21일 119 신고해서 유기견을 잡아가라고 하셨습니다. 119 구조대원분들께서 출동하셔서 포획이 힘들다고 하였고, 마을 이모님께서 구조해서 키울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혼자 구조를 여러 번 시도 하였지만, 유기견 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구조가 쉽지가 않아서 5월 22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게시판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구조를 해주신다고 하였고, 구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게시판에 양해를 구한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물론, 그 밭 주인분도 게시판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조 하루 전, 밭에 들어와서 엉망으로 해놓고 간다고 돌 던지시던 분이 누렁아~

라며 부르면서 음식으로 밭으로 유인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집으로 바로 갔으며, 도착해서 음식으로 왜 밭으로 유인하시냐, 음식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니 다짜고짜 “당신 개도 아닌데 왜 난리냐”, “정신이 이상한 여자냐”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20센티 정도에서 마주하며 폭언을 하시고, 폭행을 하려고 하자 위협을 느낀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산파출소에서 경찰관 두 분이 출동하셨으며, 이런저런 이야기 중 출동하신 경찰관 한 분이 “개인 소유지 농작물에 피해를 준 동물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은 동물학대 건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폭언을 해서 신고를 한 것이고, 유기견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니 현재 상황만 마무리하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날도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학대 관련 건으로 국민 신문고에 접수하여 칠곡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으나, 돌을 안 맞았으면 처벌이 어렵고, 구조를 해서 다친 여부 확인되면 신고해도 되냐고 여쭙어보니 그분이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시며, 제 이야기는 들을 생각이 없으시고, 무조건 처벌이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장수 트럭 관련 건으로 칠곡군 농업정책과에 신고를 한 적 있습니다. 5월 6일 - 칠곡군 농업정책과 직원분과 통화, 개장수 트럭 신고 하려고 한다고 하니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찾아보고 다음 날 오전 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접수(5월 21일), 직원분이 전화 오셔서 본인도 계속 알아보다가 이번 달은 넘기면 안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 하심(5월 24일). 민원접수해서 연락 주신 거 아니냐고 여쭙어보니, 민원접수 하셨어요 ? 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은 민원접수해서 연락준게 아니라고 하셨고 모른다고 하셨으나 칠곡군에서 답변을 완료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5월 27일).

5월 24일 통화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고, 개장수 트럭 사진까지 개인 메일로 보내드렸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이라서, 개장수 트럭이니깐, 알고 보면 심각한 사건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담당 경찰관, 지자체 담당 부서팀분들께 시민으로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희대 살인자들 공통점 가운데, 사람을 살인하기 전 동물을 상대로 살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는 곧 아동학대, 살인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느끼고, 동물을 살해 또는 상해를 입혔을 때만 동물학대 처벌이 적용되지 않고, 학대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며, 동물 학대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의 동물범죄 수사 관련 개선방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김 순 영



경찰의 동물범죄 수사 관련 개선방향

김순영 경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1. 동물보호법 위반 경찰 수사 현황

- 경찰이 취급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검거 건수와 인원도 상응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 '10~'19년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발생건수(건)	69	98	131	132	233	238	303	398	531	914
검거건수(건)	64	89	118	113	198	204	243	322	416	723
검거인원(명)	78	113	137	150	262	264	330	459	589	962

* '20년 통계는 미확정 상태이지만, 발생·검거 건수·인원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 주요 개정 사항

- <개정 방향> 처벌대상인 '동물학대' 뿐만 아니라 '동물대상범죄' 전반으로 내용을 확장하고, 개정법령·관련 판례 및 자문내용을 반영

※ △ 이은주 의원실 주관 동물자유연대 간담회('20.11월) △ 검역본부 상대 '병성감정 의뢰' 서식 등 문의('21.1월) △ 동물자유연대 주관 법조·수의학계 간담회('21.2월)

- <주요 내용> 총 4개 장으로 구성하여 ① 기본 개념과 ② 「동물보호법」상 벌칙해설 ③ 기타 관련 법률 벌칙해설 ④ 대응요령 순으로 서술

「동물보호법 벌칙해설」 주요 내용

- ▶ (기본개념 해설) 동물보호 관련 법률·제도를 개관하고, '동물대상범죄'에 통용되는 기본 개념(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가축, 동물학대 등) 해설
- ▶ (동물보호법 벌칙해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포획·판매, 유기, 사진·영상물 인터넷 게재 등 「동물보호법」상 각종 벌칙규정 해설
- ▶ (기타 관계법률 벌칙해설) 야생생물법, 수의사법 등 기타 법률상 벌칙규정 해설
- ▶ (대응요령) △ 112신고 접수자,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지역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조치 요령 및 지자체 공조방법 △ 수사실무자를 위한 동물사체 부검의뢰 및 양형기준 설명

3. 동물대상 범죄 수사상 개선 필요사항

- <유관기관 공조> 경찰은 법률상 벌칙조항을 근거로 동물학대 등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찰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 벌칙조항은 동물보호에 관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강력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지자체장의 구조·보호·출입·검사 등 적절한 행정권한의 발동과 함께 수사가 진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범죄예방 관심> 범죄수사는 사후적·진압적 작용으로서, 동물대상 범죄자의 검거·처벌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함
 - 동물소유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동물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양형기준 마련>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수사단계에서 사실상의 지표로 작용함과 동시에,
 - 국민들로 하여금 동물학대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수위를 예측하게 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므로, 독자적 양형기준 마련 필요
 - ※ 경찰청은 제8기 양형위원회 상대로 △동물대상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시민단체·언론 등 입장 등을 들어 동물대상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양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4. 7.)

4. 향후 추진사항

- <수사 지도> 범행의 반복성·잔혹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관서에서 면밀히 수사지도하여 엄정 사법처리
- <내부 교육> 동물대상범죄 수사 관련 내부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해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 추진 중 ('22년 시행 예정)
- <대외 협력> 동물대상범죄 근절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교류 확대

토론 4

동물학대 사건에서의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과 한계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
박 상 후



동물학대 사건에서의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과 한계

박상후 주무관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학대 발생시, 『동물보호법』 제8조2항에 따라 “피학대동물”의 긴급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동물의 “피난권”을 발동하여 학대 행위자 등으로부터 격리 및 치료·보호조치 및 보호비용을 청구 및 반려동물의 소유권 취득 등이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이다.

1 동물보호감시원이란?

『동물보호법』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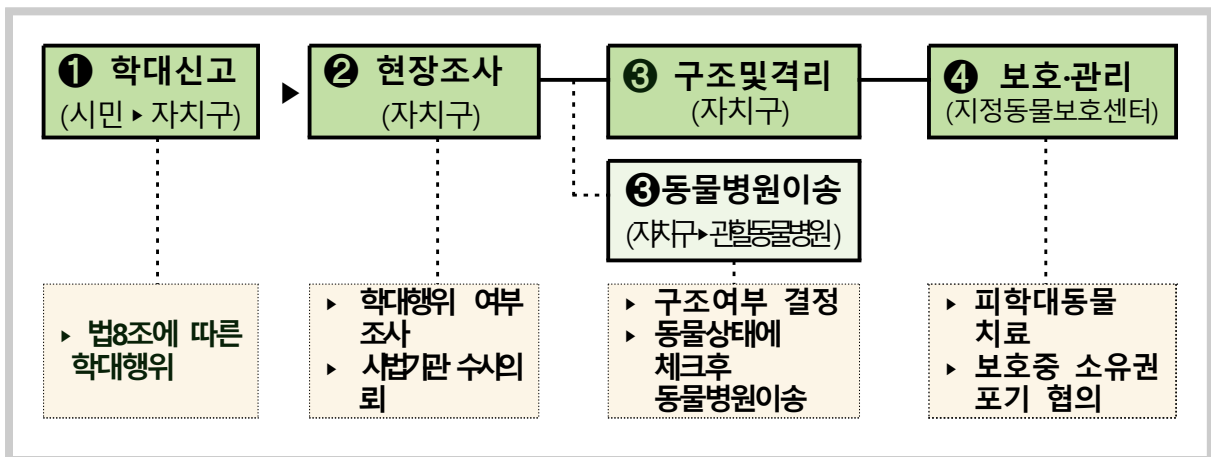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물보호감시원역할과 권한

☐ “피학대동물” 구조요청 및 신고·접수시

- ① “피학대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사실관계를 현장에서 확인. 소유자, 신고자(민원인), 목격자 등 신고내용을 접수 받아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사법기관으로 협조요청 하여 경찰 입회하에 소유자 등과 면담 등을 실시하여 CCTV 및 학대 증거영상 확보하여 해당 지자체의 사법기관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금지)위반으로 수사·고발 조치 의뢰 (현장복명서등 첨부하여 수사의뢰)
- ② 상습·고의성 및 상해의 정도에 및 학대의 재발 가능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민원인), 목격자 등의 증언 및 정보수집을 실시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로 수사·고발 조치 의뢰
 - ※ 단, 동물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시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동물은 “동물의 피난권”을 발동하여 구조·보호 조치(소유자로부터 격리)를 하여야 한다.
- ③ 피학대동물은 수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보호기간을 정하여 최소 3일 이상 지자체 지정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7조)를 동시에 소유자와 면담하여 반려동물 ‘소유권포기’에 대한 협의

※ “피학대 동물”의 긴급 구조·보호 실시 요령



3

동물학대란?

-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로부터 상해·방치·유기 등으로 학대를 받아 소유자로부터 적정하게 치료·보호 등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동물 말한다.

4

동물보호감시원의 한계

- ① “피학대동물”이 방치되어 있을시, 소유주 등이 현장에 없거나 소재불명일시 구조 및 격리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예) 실제 사례로 소유주가 임대료를 체납하여 몇 달 동안 집을 비워두고 있다는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개인사유지로 인하여 구조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며칠 동안 해당 건물의 건물주(집주인)를 찾아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대리서약을 받아 경찰관 입회하에 문을 열고 들어가 구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조시 현장에는 반려동물 3마리가 있었으며 3마리 중 1마리는 사망하였고 나머지 2마리는 살아있어 구조하여 보호 조치 후 경찰서에 동물학대 수사의뢰하여 소유주를 파악하여 소유주에게 반려동물 소유권 포기서약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

- ② 동물보호감시원의 인력 부족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반려동물팀 혹은 동물복지팀이 신설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수는 최소 1명이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는 대부분 현장업무가 대부분이나 1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신고인), 동물의 소유자 등 만나 면담 등을 하고 있어 최소한 1명이 아닌 2명 이상으로 늘어 동물보호 감시원의 직무를 다할 수 있으면 좋겠음.

5

입법과제 및 보완사항

- ① 현행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사유재산(재물)로 되어있어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은,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8조(동물의 반환 등)에 제1항제2호 따르면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학대동물”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이나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소유자에게는 2차, 3차의 학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유주에게 반환되는 것을 법적으로 보완하였으면 좋겠으며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로 수사·고발 조치 상황일 때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파학대동물”의 거취에 대한 문제가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

- ② “피학대동물”의 소유자를 「동물보호법」으로 사법기관에 수사·고발조치 하였을 경우에 관

공서를 방문하여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욕설·폭언 등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

토론 5

피학대 동물의 사후관리 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양 성 철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추진 배경 및 현황

- 최근 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 사건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 동물보호법 위반 : ('17) 530건(기소201) → ('18) 632(187) → ('19) 1,098(350)

- 동물 학대자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해만 24건(6.14기준) 등록

- 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21.2.12. 시행)하여 벌칙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나,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최근 3년간 징역형 4건)

* 연도별 벌금형 : ('15) 17 → ('16) 21 → ('17) 24 → ('18) 31 → ('19) 35

- (처벌강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지속 강화

* (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2년/2천만원 ('18.3월)

**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3천만원으로 벌칙 추가 강화 ('21.2월)

- (학대행위 범위 확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18.3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18.9월) 등 추가

-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20.2월)

- *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질병 유발
- (양형기준) 잔인한 동물학대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21.4월)하였으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미선정(6.7.)
- * 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 발생의 빈도 수,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와 「관세법위반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선정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2. 제도개선 방안(안)

-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육금지처분,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1)
-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한 동물*을 최대 5년 동안 사육·관리 및 보호할 수 없도록 조치
- 사육금지처분 기간 중에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거나,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간 연장(5년 이내) 가능
- * 피학대 동물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가 소유한 모든 동물이 해당될 수 있음
-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자는 200시

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이수

□ 사육금지가처분 제도 도입 및 지자체가 구조한 피학대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21)

○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피학대 동물이 적절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금지가처분 가능

- 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을 받은자가 사육·관리하고 있는 동물의 격리 여부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 구조된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 소유자 등이 계획대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지 지자체가 점검하고, 계획서 미 제출 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격리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

□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 확대

* 예 :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 사육하는 행위 등 금지 등

□ 동물학대 관련 교육 및 지도·단속 강화

○ 동물 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21년)하고,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초·중·고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협의('22)

- *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1~'25년)에 동물 존중 등 보호·복지 교육 반영
- 지자체 동물학대 지도·단속 및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해 협의(행안부 '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요청) 추진
 - * 동물보호 담당 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은 시·군당 1.1명에 불과
-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의 동물학대 판단 지원

붙임 1

동물학대에 대한 국가별 최대 형량

* '18.2월 기준(출처 : 「동물학대행위의 범위 및 처벌수위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최대 형량	비고
영국	6개월	동물복지법 2006 * 최근 5년으로 형량 늘리는 것을 검토 중 * 벌금 무제한
오스트리아	1년	동물보호법 2004 동물의 보호에 대한 연방법 최근 2년 형으로 올리기 위해 형법 개정 작업 중
포르투갈	1년	법률 번호 400/82에 의한 33번째 개정 형법 그리고 법률 번호 92/95 2014의 두 번째 개정법
스페인	18개월	동물보호법 2007, 형법
덴마크	2년	동물 보호에 관한 법 1991
그리스	2년	법 4039/2012
스웨덴	2년	형법에 있는 '동물 학대'
헝가리	3년	동물에 대한 보호와 인간적인 처우에 관한 1998년의 법 28
독일	3년	동물보호법
네덜란드	3년	동물보건과 복지법 1992
이탈리아	3년	이탈리아 형법 '동물의 감정에 반하는 범죄' 2004
폴란드	3년	동물보호법 1998
핀란드	4년	핀란드 형법 17:14A1
호주	최대 5년	법률은 주마다 다름. - 뉴사우스웨일주와 서호주는 5년의 구금형까지 선고 가능
일본	5년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6월부터 5년으로 상향)
캐나다	5년	캐나다 형법 445조와 445.1조
인도	5년	동물 보건과 복지법 2013
뉴질랜드	5년	동물복지 수정법 2010
미국	최대 51년*	법률은 주마다 다름, 메릴랜드 등 8개주는 5년 * 조지아 주 누범의 경우

붙임 2

동물학대 처벌 강화 관련 제도개선 추진 현황

시행일	구분	내용
'91년	동물학대 신설	① 동물을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고통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동물학대 행위 적용 제한 규정(법 11조) 1.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른 식용목적 도살, 수렵, 약용·공업목적으로 사용, 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08년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u>공개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u> ② 도구 약물, 채액 채취, <u>도박 유흥(민속경기 제외)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u> ※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시행규칙에 신설 ③ 유기동물을 죽이는 행위
	처벌강화	①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년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유기동물 알선 구매 행위 추가 ② 동물학대 행위 적용 제한 규정 삭제
	처벌강화	① 500만원 이하 벌금 → <u>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u>
'18.3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동물을 <u>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u> 추가 ② <u>신체적 고통</u> 을 주는 행위 추가 ③ 동물학대 행위 영상 촬영 또는 배포 ④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오락·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300만원 이하 벌금) ⑤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① 1년이하, 1천만원이하 → <u>2년/2천만원</u> ② 양벌규정 추가 ③ 유기 처벌강화(1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18.9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u>‘애니멀 호딩’*</u> 추가(2년/2천만원) *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질병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
'19.3월	처벌강화	①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 시 5년간 영업 허가·등록 금지
'20.2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추가
'21.2.1 2	처벌강화	①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2년/2천만원 → <u>3년/3천만원</u>) ② 유기 처벌강화(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MEMO



MEMO



